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8 선고 2020가합54012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명

담당변호사 성기창

피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진

담당변호사 이지수

변론 종결 2021. 1. 14.

판결 선고 2021. 1. 28.

주 문

1. 피고와 B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21.

체결된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양곡의 유통, 가공, 판매 및 양곡제품 제조, 판매 등을 하는 회사로서 C단체의 계열사이다.

나.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6. 9. 2. 및 2017. 2. 2.

원고와 2회에 걸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기업은행 및

D은행에 제출하여 아래 <표> '대출금액'란 기재 각 돈을 대출받았다(이하 각 신용보증약정을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과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표>

구분 순번	보증일자	보증금액(원)	보증기한 (변경보증기한)	대출은행	대출과목	대출일자	대출금액(원)
1	2016. 9. 2.	295,800,000	2016. 11. 30. (2017. 5. 30.)	기업은행	기업구매자금대출	2016. 9. 2.	348,000,000
2	2017. 2. 2.	208,000,000	2018. 2. 1.	D은행	기업구매자금대출	2017. 2. 2.	260,000,000

다. 소외 회사가 2017. 3. 3.경 기업은행과 D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제 때 변제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기업은행과 D은행으로부터 각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받고, 2017. 5. 12.기업은행에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원리금으로 298,547,583원(이하 '제1대위변제금'이라 한다), 2017.

6. 26. D은행에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원리금으로 213,054,430원(이하 '제2대위변제금'이라 한다)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마. 1) 피고는 2017. 7. 5. 소외 회사 및 E와, 소외 회사가 채무자로서 채권자인 피고에 대하여

2017년도 농산물외상거래약정서에 의한 거래로 인해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특정근담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근저당권설정자인 E가 자신 소유인서울 용산구 F 외 2필지 지상 G아파트 H호(이하 'E 소유 건물'이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26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2017.7. 5.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하고, 2017. 7. 5.자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한 근저당권을 '2017. 7. 5.자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7. 7. 5. E 소유 건물에 관하여, 2017. 7. 5.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260,000,000원, 채무자 소외 회사,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2017. 7. 5.자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3) 피고는 2017. 7. 25. 소외 회사와, 2017. 7. 25.부터 1년간 피고가 소외 회사에 농산물(양곡) 외상공급한도 200,000,000원을 부여하고, 소외 회사는 물품을 인수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피고에게 물품대금채무를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농산물(양곡)외상거래약정(이하 '2017. 7. 25.자 외상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바. 1) 피고는 2017. 8. 21. 소외 회사와,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농산물 외상거래로 인해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한정근담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피고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채권최고액9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한 근저당권을 '이 사건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7. 8. 21.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900,000,000원, 채무자 소외 회사,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3) 피고는 2017. 8. 24. 소외 회사와, 2017. 7. 25.자 외상거래약정의 외상공급한 도(거래한도)를 200,000,000원에서 480,00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하는 내용의 거래추가약정(이하 '2017. 8. 24.자 추가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사. 한편 원고는 소외 회사 등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7차전9870호로, 기업은행에 대한 제1대위변제금과 D은행에 대한 제2대위변제금에 관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7. 7. 11. 위 법원으로부터 '소외 회사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9,928,105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 결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지급명령 중 소외 회사에 대한 부분은 2017. 7. 29.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 등을 상대로 신청한 이 사건 지급명령이 2017. 7. 29. 확정되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소외 회사가 2017. 7. 31.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사실 및 2017. 8. 21.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는 사실을 늦어도 2017년 말까지는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 원고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20. 5. 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것으로서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2017. 7. 31.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소외 회사 등을 상대로 신청한 이 사건 지급명령 중 소외 회사에 대한 부분이 2017. 7. 29.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적어도 2017년 말경에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료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도과한 이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가 금융기관이라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소외 회사가 2017. 3. 3.경 기업은행과 D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제 때 변제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원고는 기업은행과 D은행으로부터 각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받은 사실, 원고는 2017. 5. 12. 기업은행에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제1대위변제금을, 2017. 6. 26. D은행에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제2대위변제금을 각 대위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전에 소외 회사에 대하여 제1대위변제금과 제2대위변제금에 관한 구상금 채권을 갖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인정된다.

나. 소외 회사의 채무초과상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2017. 8. 21.) 소외 회사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가 있었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에 가까운 2017. 8. 14.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 합계는 917,250,000원이다.

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소외 회사의 소극재산으로는, 각 100,000,000원 이상의 채무만 기준으로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제1대위변제금(298,547,583원) 및

제2대위변제금(213,054,430원)으로 인한 각 구상금 채무 합계 511,602,013원(원금만을 기준으로 한 금액이다), I은행에 대한 406,727,000원의 대출금채무, D은행에 대한 259,980,000원의 대출금채무가 있었다(그 밖에 I은행과 기업은행에 대하여 각 100,000,000원 미만의 대출금채무가 추가로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 소극재산의 합계는 1,178,309,013원이고, 여기에서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전인 2017. 6. 26. 소외 회사로부터 일부 회수한 대위변제금 1,695,273원을 공제하더라도 1,176,613,740원이 되므로,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은 명백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여군수, 처인가청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회신결과, J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가)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참조).

나) 그러나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 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사업의 계속 추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기존 채무를 아울러 피담보채무 범위에 포함시켰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할 여지는 있다.

또한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구입처로부터 외상매입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사업에 필요한 물품의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물품을 공급받아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물품을 공급받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사업의 계속 추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기존 채무를 아울러 피담보채무 범위에 포함시켰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할 여지는 있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25842 판결 참조).

2)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인 소외 회사가 자신 소유인 이 사건 각 토지를 채권자 중의 하나 인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소외 회사가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서 부득이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라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사업에 필요한 물품의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물품을 계속 공급받기 위하여 부득이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사해행위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하여 소외 회사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①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이기는 하였으나, 소외 회사가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상당 부분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로 부터 1개월 내지 3개월 이전 무렵에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따라 발생한 채무로 보인다(즉, 소외 회사로서는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직전인 2017. 7. 31. 시가 합계 9억 원을 상회하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도 하였다. 따라서 소외 회사가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 부득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업규모를 확장하기 위한 것으로 볼 여지도 상당하다.

② 소외 회사와 피고가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소외 회사는 2017. 7. 25.자 외상거래약정에 따른 기존 채무에 관해서는 이미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한 2017. 7. 5.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상태였고, 피고가 소외 회사에 추가적인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사업에 필요한 물품의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③ 2017. 7. 5.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2017. 7. 25.자 외상거래약정으로 인한 현재 및 장래의 채무에 한정되는 반면(특정근담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2017. 7. 25.자 외상거래약정 및 그에 대한 변경약정인 2017. 8. 24.자 추가약정으로 인한 채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농산물 외상거래로 인해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한정근담보)이다. 또한 피고가 2017. 8.24.자 추가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에 추가적으로 부여한 외상거래한도는 280,000,000원에 불과함에도(기존 2017. 7. 25.자 외상거래약정에 따른 외상거래한도 200,000,000원을 포함하면 480,000,000원이지만, 그에 관한 담보인 기존의 2017. 7. 5.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도 않았다), 그 대가로 마쳐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은 900,000,000원에 이른다. 결국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주된 목적이 2017. 8. 24.자 추가약정에 따라 부여된 외상거래한도280,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기존 내지 장래의 외상거래대금채무를 포괄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④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제공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사업의 계속 추진을 위한 것으로서 부득이한 경우에 한정된다고함이 타당하므로, 위와 같이 채권자 중

1인인 피고에게 제공된 담보가치 중 대부분이 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추가 부여받은 외상거래한도(280,000,000원)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게까지 그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라.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항변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소외 회사가 제공한 담보인 이 사건 각토지 외에 소외 회사의 재산상태를 잘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선의라고 항변한다.

2)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참조).

3)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는 C단체의 계열사로서 여신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소외 회사의 신용정보 등록 여부 등을 확인할 수있었던 점(2017. 3. 3. 소외 회사에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피고가 제출한 여신거래한도 변경 품의서(을 제7호증의2)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소외 회사의 신용정보 내지 신용등급 등에 대한 여신심사를 거친 것으로 보이는 점(제2면 5.항 참조), 3 위 다. 2)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2017. 7. 25.자 외상거래약정 내지 2017. 8. 24.자 추가약정으로 인한 채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농산물 외상거래로 인해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한정근담보)이고,

그 채권최고액도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 합계의 전액에 가까운 900,000,000원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수익자인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7. 8. 21.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 김상훈, 판사 이준현, 판사 백상빈